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9. 13 (화) 평 창 군 수(재무과장)

나. 회부일자 : 2005. 9.20(화)

다. 상정일자 : 2004. 9.23(금) 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2005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3. 주 요 골 자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취득이 총 5건으로 7,722㎡, 1,056,684천원이고

처분이 총 1건으로 6,984㎡, 287,739천원인 바 그 상세내역은

가.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 취득은

- 진부면 재활용센터 부지 1필지 3,286㎡
- 봉산서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3필지 939㎡ 등
토지 매입이 2건 4필지 4,225㎡이고
- 봉평 소방파출소 396㎡, 마지 보건진료소 149㎡ 등
건물 신축이 2동 545㎡

나. 교환 취득·처분은

- 대관령 기상대 청사 이전부지를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 군유지 3필지 6,984㎡를 처분하고
- 국유지 1필지 2,952㎡를 취득하고자 함

4. 검토 결과

- 2005년도 당초 및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라
 - 가. 취득이 총 5건으로 7,722㎡, 1,056,684천원이고
 - 나. 처분이 총 1건으로 6,984㎡, 287,739천원임
- 취득재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 가. 진부면 재활용센터 설치 부지 1필지 3,286㎡를 7,886만원에 매입하는 것이고
 - 나. 봉산서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3필지 939㎡를 1억원에 매입하여 지역 문화재인 봉산서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취득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 건물 신축은 2동 545㎡으로
 - 봉평 소방파출소 신축은 1동 396㎡로 현재 있는 봉평소방파출소는 긴급상황 발생시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차량으로 인해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어
 -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시 신속 출동이 용이한 봉평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 마지보건진료소는 기존건물이 노후되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부지인 평창읍 마지리 666-1번지에 현대시설로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교환취득·처분은
 - 가. 대관령 기상대 청사 현재 부지인 도암면 횡계리 661-21번지 2,952㎡를 군에서 취득하고, 대관령 기상대 청사이전 대상부지인 군유지 3필지 6,984㎡를 교환코자 하는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1항 1호에 보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의회의 사전협의제를 이용 예산의 편성 이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예산서가 선제출되어 내부 검토중인 상태에서 9월 13일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하는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예산안 검토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이 요구됨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재정법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략

제101조 (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0.20>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생략

□ 지방자치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 5. 생략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7. ~ 11. 생략